

	보도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배포시부터 보도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		
책임자	선욱 과장 (2156-9910)	담당자	홍문기 사무관(2156-9915)
배포일	2015. 6. 25. (목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2매

제 목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1. 개요

- '15.6.25일 국무회의에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 시행령」 개정안 통과
- 「자본시장법」 개정("14.12월말)을 통해 새롭게 시장질서 교란행위금지가 도입되고 이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하게 됨에 따라,
- 동 시행령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,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

< 시장질서 교란행위 주요 내용(자본시장법 제178조의2) >

- ①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(중요)정보 이용행위
 - i) 2차·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·이용
 - ii) 해킹·절취 등으로 미공개정보를 취득·이용
- ② “목적성 없이”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(예시)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허수성 매수·매도 주문이 폭주하여 시세 급변을 초래하는 경우

2. 주요 내용

①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 구체화(시행령 제207조의2)

- 미공개 (중요)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적용 배제

- ①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 체결 등을 하여 그에 따른 후속행위로서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
- ② 법령,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
- ③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②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(시행령 제307조)

- 과징금 산정시 ① 위반의 내용* 및 ② 위반의 정도**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

* (i) 미공개 (중요)정보 이용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(ii)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

** (i)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(또는 회피한 손실액)의 규모 (ii) 거래에 이용한 정보를 알게 된 경위 (iii) 위반행위가 시세 등에 미치는 영향 등

-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(금융위원회 고시)에 상세히 규정할 예정

3.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

개정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은 '15.7.1일부터 시행 예정

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

-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